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-20호

「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21일

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○ 정례회 회의 총 일수가 6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되는 예산안, 결산승인 등 주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충분한 심의가 곤란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,

○ 연간 회의 총 일수 130일 범위에서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회기를 상향조정(65일→70일)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정례회의 회기를 65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상향조정함(안 제3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6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운영전문
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02-789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(전화 042-270-5121,
FAX 042-270-5019, E-mail : ychm11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65일”을 “70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회기)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5일 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.</p>	<p>제3조(회기)----- ----- -----70일----- -----</p>

관 련 법 령

1 지방자치법

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는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2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
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